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 1. 제 안 경 위

- 발 의 자 : 김경훈 의원 외 48명
- 의안번호 : 제1055호
- 발의일자 : 2023년 8월 14일
- 회부일자 : 2023년 8월 21일

### 2. 제 안 이 유

-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제2호나목에 따른 어린이공원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어린이가 안전하게 휴식 및 놀이를 즐길 수 있고 이를 통해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3. 주 요 내 용

- 가. 어린이공원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신설함(안 제22조의2).

### 4. 참 고 사 항

- 가. 관계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비대상사유서) 참조
-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 5. 검토 의견

### 가. 개요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공원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어린이가 공원에서 안전하게 휴식하며 놀이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 나. 검토의견

- 「국민건강증진법」은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국민건강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동 법 제8조의4(금주구역 지정)<sup>1)</sup> 신설에 따라 음주 폐해 예방과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조례로 일정한 장소를 금주구역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바 있음(2021년 6월 30일 시행).
- 서울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에 따라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이하 “음주문화조례”)를 2017년에 제정하여 시행<sup>2)</sup> 중이며, 제4조에 따라 음주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음주청정구역<sup>3)</sup>’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서울시(시민건강국)는 도시공원 22개소(2018년 1월 1일)를 지정한 바 있음(붙임1).

1) [시행 2021. 6. 30., 2020. 12. 29, 일부개정]

제8조의4(금주구역 지정) ① 지방자치단체는 음주폐해 예방과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가는 관할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는 음주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주구역 안내표지의 설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시행 2017. 11. 19.] [2017. 5. 18., 제정]

3) 제4조(음주청정지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음주폐해를 예방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 공원을 말한다) 및 어린이 놀이터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한편, 서울시는 ‘음주청정구역’을 ‘금주구역’으로 강화하여 지정하고자 지난 319회 정례회에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출하였고, 해당 안건은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2023. 6. 1.)된 후 상정보류 되어 있는 상황임.

제출된 조례안은 실내 공간인 청사, 도서관,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을 비롯해 실외 공간인 도시공원, 어린이 놀이시설, 하천·강, 대중교통시설 등으로 금주구역을 확대 지정<sup>4)</sup>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와 관련하여 제13호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과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이 포함되어 있음.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 제4조)〉

<p>제4조(음주청정지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음주폐해를 예방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b>음주청정지역</b>으로 지정할 수 있다.</p>	<p>제4조(금주구역의 지정 등) ① ----- 음주폐해 예방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 <b>금주구역</b>-----.</p>
---	---

4)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장 제출, 2023. 5. 30.)  
안 제4조(금주구역의 지정 등) 각 호

1.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청사
4. 「영유아 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5.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6.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사(校舍)
7.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과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8.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
9.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10. 「도서관법」 제4조에 따른 공공도서관
1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과 교습소
1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1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
14. 「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강 구역 및 시설
15.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등 대중교통시설
16. 그 밖에 다수 지역주민의 요구가 있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하는 음주문화에 관한 사항은 음주문화조례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안건의 처리결과를 준용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관련 개별 조례에 반영하는 것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할 것임.

특히, 현행 음주문화조례에서 주로 도시공원을 음주청정구역으로 규정하고 있고 실제로 도시공원 22개소만 지정된 상황으로 볼 때 도시공원의 관리·이용 등을 규정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에서도 금주구역에 대해 규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본 조례안은 도시공원 중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어린이가 방문하는 어린이공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 강서구 등 일부 자치구에서 어린이공원을 금주구역으로 지정<sup>5)</sup>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또한, 어린이공원은 인근에 거주하는 어린이를 위한 놀이공간이지만 야간에는 주로 어린이가 많지 않고 공원처럼 방문하는 지역주민들이 있으므로 금주구역으로 지정하여 공간의 특수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것임.

- 한편,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과태료)제3항제1호에 따라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경우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바, 동 조례 제23조(과태료 부과 징수 등)에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을 반영할 필요도 있을 것임.

---

5) 강서구(2023.7.26.), 관악구(2023.4.20.), 중랑구(2022.11.24.), 성동구(2022.11.10.), 광진구(2022.10.17.), 마포구(2022.3.24.), 중구(2022.3.4.),

**[붙임1]**

**서울시 읍주청정지역 지정현황**

(17개구 22개소, '18.1.1.)

번호	공원종류	공원명	소재지	면적(m <sup>2</sup> )
1	근린공원	천호	강동구 올림픽로 702	전역 (26,696)
2	도시자연공원	길동생태공원	강동구 천호대로 1291	전역 (80,683)
3	근린공원	을현	강남구 을현동 56	전역 (157,535)
4	근린공원	북서울꿈의숲	강북구 월계로 173	전역 (665,190)
5	근린공원	서울식물원	강서구 마곡동로 161	전역 (504,012)
6	근린공원	어린이대공원	광진구 능동로 216	전역 (560,552)
7	근린공원	푸른수목원	구로구 연동로 240	전역 (103,354)
8	생태공원	창포원	도봉구 도봉동 4	전역 (51,470)
9	근린공원	간데메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2길 59	전역 (15,179)
10	근린공원	보라매	동작구 여의대방로20길 33	전역 (424,106)
11	근린공원	월드컵	마포구 상암동 478	전역 (2,284,085)
12	근린공원	경의선숲길	마포구 새창로 37	전역 (101,668)
13	문화공원	문화비축기지	마포구 증산로 87	전역 (101,510)
14	근린공원	시민의 숲	서초구 매현로 99	전역 (258,991)
15	근린공원	서울숲	성동구 성수동 685	전역 (1,156,498)
16	근린공원	응봉	성동구 뚝섬로 273	전역 (75,570)
17	문화공원	서울호수공원	양천구 신월동 산68-3	전역 (217,946)
18	근린공원	선유도	영등포구 선유로 343	전역 (110,407)
19	근린공원	여의도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68	전역 (229,539)
20	근린공원	낙산	종로구 낙산길 41	전역 (198,477)
21	도시자연(근린)공원	남산	중구 회현동1가 산1	전역 (2,896,887)
22	근린공원	중랑캠핑숲	중랑구 망우동 241-20	전역 (179,666)